

	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4. 3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의 개발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,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동부의 "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"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함에 있어 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정부투자·출자기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,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되는 기업과 각 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장이 연수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을 연수대상기관으로 한다.

제3조(연수기간 및 시간) 연수기간은 2월 이상으로 하고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, 1주 총20시간 이상으로 하며, 이 경우에는 1일 8시간,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참여대상자) 이 규정은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한다. 단, 졸업 예정자의 최종학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제5조(연수신청) 연수희망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 또는 기획산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점신청절차) 연수를 완료한 학생은 현장체험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수료증 또는 실습보고서를 학점신청요청서<별지 제1호 서식>와 함께 기획산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획산학처에서는 서류를 취합하여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점의 인정) 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학기에 교양선택 학점으로(과목명 : "직장체험실습")인정 한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학점의 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 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교무입학처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